시청역 동원시티비스타 오피스텔 분양광고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안드로이드 | 아이폰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양광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안내 사항

- 시청역 동원시티비스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택전시관 관람을 사전 예약을 통한 방문과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시청역동원시티비스타.com/)를 운영 할 예정입니다.
- 시청역 동원시티비스타는 홈페이지(http://시청역동원시티비스타.com/)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및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시행조치에 따라 예약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으로 폐쇄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주택전시관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측정기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전신소독기, 손 소독제, 비 접촉 체온계 등을 통한 예방 절차에 불응 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주택전시관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등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시청역 동원시티비스타 주택전시관 내 분양 상담전화(☎051-863-1300)등을 통해 분양광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고객님의 문의 집중 등으로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분양광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 사전관리 및 청약 가상체험을 통하여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1.08.26) 기준입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10%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1.08.25,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부산광역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1.08.25, 광고일과 다름)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연제구는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거주자 우선공급이 적용되며, 전매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호실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시	08월 31일(화)	09월 03일(금) 16:00시 이후	09월 06일(월)(10:00~16:00)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주택전시관 방문계약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동원갤러리 주택전시관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30 동원갤러리 3층)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오피스텔	○	○	○

■ 본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2021-건축과-분양신고2호,2021.08.25.]로 분양신고필

■ 본 건축물은「건축법」제 1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부산광역시 연제구 허가번호: 2018-건축과-신축허가-56(2018.07.26.)]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1,072.7050m^2
- 건축물 연면적 : 총 15,132.9531m^2(오피스텔 3,201.3380m^2)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360-13번지 외 6필지

■ 공급규모 : 지하 2층 ~ 지상 26층 1개동 중 오피스텔 총 42실

■ 주차대수 : 총 164대(자주식 20대, 기계식 144대 / 아파트 106대, 오피스텔 46대, 근린생활시설 12대)

■ 건축물의 층별용도 : 지하2층~지하1층(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지상1층~지상2층(근린생활시설 등), 지상3층~지상23층(오피스텔 등), 지상3층~지상26층(공동주택 등)

■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 미설정(교육환경보호구역 아님)

■ 분양대금관리 : 관리형토지신탁에 의거 분양하는 사업으로 분양대금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가 동일함.

■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 대신자산신탁(주)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체결

■ 내진설계 : 최대유효지반가속도 [0.239g],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에 해당하는 내진성능 확보되었음.

■ 입주시기 : 2023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타입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호실별 계약면적(㎡)			호실별 대지지분	총공급 호실
					호실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전용면적	전용공유면적	소계				
업무시설 (오피스텔)	2021950065	01	31	가형	31.6470	15.4569	47.1039	9.3924	56.4963	5.5184	21
		02	56	나형	56.7136	22.4031	79.1167	16.8317	95.9484	9.8894	20
		03	56-1	나1형	56.7136	22.4012	79.1148	16.8329	95.9477	9.8880	1
	합 계										4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타입별	공급호실수	층수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60%)						잔금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30%
							계약시	계약후 15일 이내	'22.01.15	'22.04.15	'22.07.15	'22.10.15	'23.01.15	'23.04.15	입주시
가형	3	3~5층	38,698,000	157,302,000	15,730,200	211,730,200	10,000,000	11,173,020	21,173,020	21,173,020	21,173,020	21,173,020	21,173,020	21,173,020	63,519,060
가형	5	6~10층	39,488,000	160,512,000	16,051,200	216,051,200	10,000,000	11,605,120	21,605,120	21,605,120	21,605,120	21,605,120	21,605,120	21,605,120	64,815,360
가형	5	11~15층	40,475,000	164,525,000	16,452,500	221,452,500	10,000,000	12,145,250	22,145,250	22,145,250	22,145,250	22,145,250	22,145,250	22,145,250	66,435,750
가형	5	16~20층	41,463,000	168,537,000	16,853,700	226,853,700	10,000,000	12,685,370	22,685,370	22,685,370	22,685,370	22,685,370	22,685,370	22,685,370	68,056,110
가형	3	21~23층	42,252,000	171,748,000	17,174,800	231,174,800	10,000,000	13,117,480	23,117,480	23,117,480	23,117,480	23,117,480	23,117,480	23,117,480	69,352,440
나1형	1	3층	69,240,000	266,760,000	26,676,000	362,676,000	10,000,000	26,267,600	36,267,600	36,267,600	36,267,600	36,267,600	36,267,600	36,267,600	108,802,800
나형	2	4,5층	69,248,000	266,752,000	26,675,200	362,675,200	10,000,000	26,267,520	36,267,520	36,267,520	36,267,520	36,267,520	36,267,520	36,267,520	108,802,560
나형	5	6~10층	70,484,000	271,516,000	27,151,600	369,151,600	10,000,000	26,915,160	36,915,160	36,915,160	36,915,160	36,915,160	36,915,160	36,915,160	110,745,480
나형	5	11~15층	71,721,000	276,279,000	27,627,900	375,627,900	10,000,000	27,562,790	37,562,790	37,562,790	37,562,790	37,562,790	37,562,790	37,562,790	112,688,370
나형	5	16~20층	72,958,000	281,042,000	28,104,200	382,104,200	10,000,000	28,210,420	38,210,420	38,210,420	38,210,420	38,210,420	38,210,420	38,210,420	114,631,260
나형	3	21~23층	74,606,000	287,394,000	28,739,400	390,739,400	10,000,000	29,073,940	39,073,940	39,073,940	39,073,940	39,073,940	39,073,940	39,073,940	117,221,820

■ 거주자 우선 분양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부산광역시)는「주택법」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으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의거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1.08.25. 광고일과 다름)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 신청한 자 중 부산광역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
- 우선분양 신청결과 경쟁 발생 시 사업 주체는 기준에 따라 당첨자 및 호실을 공개 추첨하며 우선분양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청약자에 포함합니다.

(단위 : 실)

타입	공급호실(수)	신청유형 호실(수)		비고
		거주자 우선공급(10%)	일반공급	
31가형	21	2	19	※ 주민등록등본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우선 당첨자 선정 (분양신고일 : 2021.08.25. 기준) ※ 한국부동산원 전산추첨을 통해 각 타입, 층, 호실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배정
56나형	20	2	18	
56나1형	1	1	0	

Ⅱ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조정대상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하여 분양호실의 10%를 부산광역시 거주자에 우선 선정합니다.

• 단,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부산광역시 거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관련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검토 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도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분양광고일(2021.08.26.)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제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실(건)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되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고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 시	08월 31일(화)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 영업시간까지)	09월 03일(금) 16:00시 이후	09월 06일(월)(10:00~16:00)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유형(타입)별 무작위 결정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동원갤러리 주택전시관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30 동원갤러리 3층)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부산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군/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거주자 우선분양 선택(선택사항), 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용
모든 타입 공통	3,000,000원 (금삼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부산은행 전 지점)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및 법인 등을 제외하고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구비서류</th></tr>
<tr><td>본인 신청시</td><td colspan="2">•청약신청서(주택전시관 또는 부산은행 전 지점 창구 비치) •본인 도장(본인의 경우 서명 가능)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청약신청금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인 명의)</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추가서류를 추가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r><td>법인</td><td colspan="2">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구비하여야 합니다.
•청약신청서(부산은행 전지점 창구 비치)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약신청금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 법인 명의)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td></tr>
</table>

※ 창구접수는 대행은행인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주택전시관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1.08.2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타입별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1년 09월 03일(금) 16:00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
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군 내에서 타입·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Ⅲ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1년 09월 06일(월)	10:00~16:00	**동원갤러리 주택전시관**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30 동원갤러리 3층)**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계좌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BNK부산은행	113-2015-2091-06	대신자산신탁(주)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1001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공급)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구비사항</th></tr>
<tr><td>본인 계약시</td><td colspan="2">-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2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사본1부
- 계약금무통장 입금증
- 전자수입인지</td></tr>
<tr><td>법인</td><td colspan="2">-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법인인감증명서 2통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사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전자수입인지</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계약시
(배우자포함)
추가사항</td><td colspan="2">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추가서류를 추가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계약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계약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td><td>- 계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계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td></tr>
</table>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자는 본 분양광고의 제반 사항을 숙지하셔야 하며, 이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시설 현황, 도로, 소음, 일조권,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및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을 따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제2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준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동일인이 2개 이상 신청하는 경우 청약 신청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 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오피스텔은 시행주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이용시 중도금 무이자가 적용되며,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시행주체가 지정하는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무이자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주택전시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출 불가사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 또는 불가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 또는 대출 불가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정부정책, 대출취급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음.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본 오피스텔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대출금(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변경된 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함.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1차, 2차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2차 계약금 미납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 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Ⅳ 기타 계약자안내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조정대상지역(부산광역시 연제구)내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100실 이하의 오피스텔로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2항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직영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관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2에 의거 사용승인 전에 계약자가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행하며, 그 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3년 09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사항

○ 분양계약자(매수인, 분양권을 승계받은 자 포함)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에게 향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① 본 오피스텔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시행)위탁자” ㈜동서지앤씨, 목화디엔씨(주) “(시행)수탁자” 대신자산신탁(주), “시공사” ㈜동원개발이 2021년 6월 2일자로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실질적 사업주체인 위탁자의 사업비 조달, 시공사의 책임준공,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를 통해 공급되는 것입니다.

②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수탁자 명의로 개설된 분양대금 수납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③ 본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위탁자 및 수탁자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으로 본 계약 대상 자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준공검사 전 발생하자 포함)은 관계법령에 의거 위탁자 및 시공사가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수탁자에게 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자는 공급대상 목적물인 신탁재산을 보전하고, 준공 후 공급금액 완납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수탁자가 공급계약상 공급자로서 부담하는 모든 의무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범위로 그 책임이 한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탁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신탁목적 달성, 신탁해지 등)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수탁자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 및 의무(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수익자)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됩니다.

⑥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⑦ 본 건 공급대상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분양계약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관련 법령상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 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⑧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시, 시공사 교체 및 이에 수반되는 건축물 브랜드 명칭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⑨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중도금 대출 제한 비율 강화 및 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대출 및 담보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⑩ 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위탁자가 하기로 하며, 미발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⑪ 위탁자가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분양계약자가 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V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유의사항

- 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분양광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면적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고압 또는 저압 전기 사용에 따라 사업부지내에 별도의 전기설비가 설치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를 사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계약 해지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전용면적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1항 제3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마감선, 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입니다.
-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의 VR동영상은 주택전시관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주택전시관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주택전시관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당첨자는 계약 체결 시 주택전시관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본 오피스텔의 공급가격은 각 호실의 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징구)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한 입주지연보상금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법에 따라 호실 내 일부 창호는 소방대진입창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시 소방대진입창 표지가 부착되고 창호의 크기 및 형태, 개폐방식, 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조명 및 배선기구의 사양, 수량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의 보일러실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개별인테리어 공사 등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계약자가 계약금, 중도금대출 상환 또는 계약금, 중도금대출 대환처리 및 잔금 완납 후 가능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호실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추후 설계 변경된 부분을 하자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지자체 협의, 건축심의 및 인가조건(설계변경 포함), 각종인증(예비인증 및 본인증)관련 인증기관 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 등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설계변경 동의 포함)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최상층 호실의 계단의 위치, 단높이, 단넓이, 단폭은 다소 이동 및 변경이 가능하며, 상부층의 사용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명칭, 외부색채 및 마감재와 조경 계획,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급배기 휀, 태양광 집광판, 소화수조 및 기타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시설물 위치 및 형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인접된 호실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근접 호실의 경우 엘리베이터의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당 건축물은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조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재활용집합창고,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실외기 및 환기시설(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호실은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오피스텔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옥탑, 측벽, 몰딩, 창틀, 필로티, 공용홀, 동출입구, 캐노피, 지하출입구 등) 및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집적소, 조경 등)의 형태, 마감재 및 색상은 심의 및 법규,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배치 상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집적소 인접실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내하는 호실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청약신청 및 입주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호실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불빛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이용시 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차량이 주차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시공사 타 오피스텔을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수락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호실이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치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주택전시관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각 호실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호실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각 호실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등 수준의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증 시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이며, 실적용은 동등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일부호실은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호실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입주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주민등록등본 포함)을 사업주체로 필히 서면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일부 동의 엘리베이터 홀은 직접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자는 본 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공급가격은 각 호실의 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위치 및 형상은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미술작품 설치로 인해 일부 호실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도로와 접한 보도는 입주민 및 인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도이며, 입주 후 외부인의 보도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평면도와 마감자재 목록표가 입주자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주택전시관 내 비치되어 있습니다.
• 본 분양광고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부산지방법원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분양광고 및 공급계약서,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일 20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만 계약금분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본 사업지내에 공개공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 이후 장애물 설치 및 폐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광고상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단지 외부여건
• 사업지 주진입도로는 시청로(왕복2차로)와 사업지 서측도로로 청약 및 계약전에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기 바라며, 추후 이를 사유로 계약 해지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준공 이전 및 입주 후 인접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소음, 분진, 생활여건 시설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인접호실은 일조권, 조망권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도로에 인접한 건물의 일부호실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지주위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상 상위계획 및 최종측량 성과도에 따라 도로폭,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마감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와 단지 주출입구에는 자동차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 기부채납되는 부지 등의 계획은 행정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조성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여건
• 본 사업장의 지하주차장 주차 진입 및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약 2.3m으로 설계되어 있어 탑차(화물차량, 택배 차량 등)의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함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를 사유로 해당 관청 및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 계약 해제(해지)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 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여,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옥상층, 화단 등 지상 일부 구간, 지하주차장 휀룸 및 통신실 등)
• 건물 외부를 둘러싼 보도(대지소유 :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입주민, 이용 : 공공에 이용토록 함)에 대하여는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보도)이며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함.
• 건축물 서측 도로 부지가 사용승인(준공) 시 지적 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 필지 분할 또는 합병 될 수 있으며, 필지 분할 또는 합병시 서측 단지내도로는 지목상 도로로 표기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를 사유로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 민원 등의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주변에 설치되는 도로 및 일부 보행보도(추후 변경되는 도로 포함)는 향후 공공시설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준공 전 기부채납하고, 토지사용권은 포기합니다.
- 기부채납되는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등의 계획은 행정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조성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조경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용부위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 및 경관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공조시스템 가동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과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호실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마감재,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건축(경관)심의에 따라 계획되었으며, 추후 관계 인허가청의 협의과정에서 마감재, 색채 및 경관조명이 변경되어 질 수 있으니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인접호실는 이용에 의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재활용집합창고,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트렌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배면, 측면에 시공될시에는 주차라인 마킹 시공 제외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단지 배치상 향별, 층별 차이 및 호실 상호간의 향·층 및 조경(식재, 시설물)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옥상은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 및 건축(경관)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건물배치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호실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 이므로 건물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조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예비입주자 모임(카페, 동호회 등)을 결성하여 공급계약서 및 주택전시관에 정하지 아니한 추가 공사, 계약자들의 개인정보 요구, 하도급 업체 선정요구(이권개입 등), 입주지정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의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구조(지하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건물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등을 위하여 주차구획 개소, 위치, 타입비율 등의 주차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면, 측면, 후면에 설치되어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식주차장(차량용 승강기)에 인접한 일부 호실은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배치의 특성상 건물내·외 도로(지하주차장 출입램프)등에 인접한 호실은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구에는 지하주차장 출입 및 지상차량 출입램프가 설치되며, 또한 주차 차단기의 위치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옥상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보안을 위하여 출입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건물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시설물, 포장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호실은 단지 내 주차장 및 상가를 이용하는 보행자에 의해 생활소음 및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소음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에 충분히 이를 숙지하고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램프나 계단, 옹벽, 조경석 쌓기, 자연사면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용자로 하여금 프라이버시,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출입구에서 쓰레기집적소까지의 거리는 상이하며, 쓰레기집적소가 배치되어 쓰레기 차량 출입 및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 구조물의 공법, 크기, 위치, 모양, 색상, 마감재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내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거 주차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3m 이상,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1m이상으로 설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아파트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관리주체 및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주장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건물 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상부에는 설비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인접호실에서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건물 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설비시설 등의 위치 및 면적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경비실)(1개소), 지하주차장(지하2층~지하1층), 기계식주차장(2동), 주차관리실(1개소)등 부대시설 등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 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건물 내 부대시설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변경) 도면 및 착공도면의 각 호실 평면은 품질개선을 위하여 도어규격, 위치 및 개폐방향, 벽체길이, 구조, 바닥단차, 걸레받이 마감, 도어 케이싱 규격, 전등규격, 전등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타일, 석재 등의 경우 재료의 특성상 주택전시관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음.
- 내부 마감재(마루, 타일, 도배지 등)는 본 공사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인조대리석과 강화석 등 석재류는 자재의 특성상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음.
- 가구(주방, 일반, 시스템 선반가구), 외부창호,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천장재, 마루, 온도조절기, 조명, 배선기구 등은 본 공사 시 업체가 선정되어 설치되므로 동등의 유사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음.
- 강마루 바닥재의 경우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의 특성상 부주의에 따른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색,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면적별 분양되는 각 호실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전시관 호실 내 창호의 치수 및 방향, 경량벽체 유무 및 치수, 가구의 배치 및 길이 등이 착공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착공도면을 우선으로 기준하여 시공됨.
- 본 공사 시 타일의 나누기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음.(거실, 아트월, 주방, 욕실, 발코니 등)
- 호실내 거실의 아트월 설치, 복도, 침실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본 오피스텔의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의 기준 천장고(거실, 주방, 침실)는 2.3m이며 우물천장의 깊이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호실 내의 위치에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등 및 가구 등의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각 호실 커튼박스의 형태 및 크기, 높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달라질 수 있음.
- 경량벽체인 경우,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함.
- 각 호실별 치수에는 천장 몰딩이나 하부 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람.
- 각 호실 내의 온도 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 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됨.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음.(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욕실벽(PD 포함) 및 기타 조적벽 등은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비내력 골조 혹은 경량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각 호실 외부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호실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창호 개폐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면적별 분양되는 호실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홈통은 발코니, 실외기실 또는 PD내에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호실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기(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등) 설비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배선기구, 조명기구의 위치 및 수량, 재질, 문양(디자인) 등은 현장 여건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을 기본으로 하며,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에도 배수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이는 시공상 하자가 아니므로 하자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보일러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호실 내부 실시공 시「건축법 시행규칙」[별표5] 건축허용오차 내의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주택전시관과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호실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결로현상은 입주자의 관리상의 문제이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결로 및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일러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 등은 금속성 재질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므로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며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보일러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호실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후 호실 내 폴리싱타일 표면의 물기를 즉시 제거해야 하며,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공용부위의 타일 표면에 물기 발생시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입주 후 호실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계약자는 각 호실 및 발코니 외부 창호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전입, 전출, 이사 시 이삿짐 장비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가급적 이삿짐 등은 해당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창호는 층수,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차이로 인해 유리의 강도 및 두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바람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택전시관에 제시된 형태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주택전시관 기준으로 시공되며 경우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층호실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형태 및 크기 등 이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따라 장식물 등이 호실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하부에 필로티가 설치될 계획(일부 또는 전체)이며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본 공사 시공 시 자재특성, 품질, 미관 향상, 마감시공 방식 차이에 따라 주택전시관 시공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은 바닥난방이 설치됩니다.(양변기/세면기 하부, 샤워부스 내부 및 욕조 하부 제외)
- 오피스텔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호실별, 층수 별로 창호 사양(창틀, 소프트웨어, 유리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호실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시공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 보일러실에 보일러가 설치되며, 실제 시공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및 계량기가 보일러실에 설치되며, 위치는 타입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호실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호실 내부에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통합(또는 개별)으로 설치되며, 위치 및 형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주택전시관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 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전항의 경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지셔야 합니다.
- 홍보관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홍보관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실외기실이나 보일러실, 발코니 내에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됨
- 공용복도에 도시가스 배관, 가스계량기, 수도계량기 등이 설치됨.
- 기계식 주차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상가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입주 시 관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용 방법 및 세부 운영계획을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공동주택(아파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 구분이 없으므로 공동으로 관리·사용하여야 함.
- 공동주택(아파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관리는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관리 및 운영계획은 관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계약자는 지하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입주자의 주차장 이용은 주차 가능대수 범위 내에서 입주 후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함.
- 본 건축물 주차 관련 주차대수는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별도 산정되었으나 주차공간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관련규약으로 결정하여야 함
- 오피스텔 단지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 차량동선과 공동으로 사용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상가)의 지하주차장 출입구(통로, 램프)는 아파트 및 상가 입주(계약)자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통로(램프 등 포함)를 시설별로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대지지분, 계약면적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별로 지분 및 소유를 주장하거나 출입구(통로, 램프) 통제 및 차단하는 등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모든 입주자가 지하주차장 출입구(통로, 램프)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 주차, 확장형주차, 경형주차, 평형주차, 기계식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용도별주차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비 유의사항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호실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착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 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호실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침실 또는 거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호실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 호실별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배선기구, 조명기구의 위치 및 수량, 재질, 문양(디자인) 등은 현장 여건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공 시 자재특성, 품질, 미관 향상, 마감시공 방식 차이에 따라 주택전시관 시공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신발장의 하부, 욕실 중 일부(샤워부스 하부, 욕조 하부, 드레인 하부, 양변기주변, 세면기 하부 등)에는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세면대, 양변기, 주방 개수대, 가스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부에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마감 구배, 장내 비 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치수와 달리 오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호실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쿨러 설치 등으로 호실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호실별 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호실의 보일러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주택전시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인하여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
• 호실의 가스계량기 및 보일러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급수, 급탕분배기 등은 건축허가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기 분전반은 법규에 의해 거실 또는 침실, 복도 등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으며, 관등의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호실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벽걸이TV 설치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벽체 내부에는 각종 설비배관(급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일러실 그릴이 환기구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경우 환기구의 위치 및 형태는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내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장치(콘센트 등) 및 LED조명기구 적용 비율은 인허가 사항에 따라 적용 예정입니다.
• 호실 욕실 배기 방식은 직배기 혹은 공동배기 타입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욕실 및 주방 직배기로 인하여 상부 층 호실 및 인근호실에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동 최상층 우수 입상관은 지붕층 드레인 위치에 따라 부속을 사용하여 위치 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바닥배관공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음식물 처리기는 수분배기, 싱크볼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예정이며 설치 후 사용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유의사항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수준의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주택전시관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한 보상금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 PL창호(프레임, 유리등)는 주택전시관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PL창호 색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은 기준층 호실로 꾸며져 있으며 층별, 라인별로 천장고 및 출입구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해당 평면도를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각 호실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전시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조명,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헤드와 소방감지기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본 공사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책상, 의자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는 연출용 전시품입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외벽의 리브(줄눈)형태 및 옥상경관, 형태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저층부 및 고층부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실내 마감자재 중 미표기 사항 등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건축허가(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 호실 내 설치된 전시용조명은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홍보물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평면도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명칭
• 본 오피스텔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벌칙 등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회사명	주식회사 미래종합건축사사무소	청목플러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흥이앤씨	주식회사 부흥이앤씨
감리금액	203,500,000	15,400,000	5,500,000	15,4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분양사업자(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등)

구분	시행위탁자		수탁자	시공사	분양대행사
상호	목화디엔씨(주)	()동서지앤씨	대신자산신탁(주)	㈜동원개발	(주)월드제이파트너스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 431호(우동, 선프라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112번길 23, 상가동301호(연산동,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54, 상가동9층(민락동, 센텀비스타동원1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3, 1820호(우동, 오션타워)

		현대오피스텔)			
법인등록번호	180111-1284784	180111-1268085	110111-7124665	180111-0029438	180111-1272698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등록업자	부동산개발업	사업방식
대신자산신탁(주)	서울190067	관리형토지신탁

■ 주택전시관 위치 및 분양안내

- 주택전시관 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30 동원갤러리 3층 Tel) 051-863-1300

■ 본 분양광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전시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본 광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분양홍보관(홈페이지) 및 위치 http://시청역동원시티비스타.com